



교직원 역량개발 규정

규정번호	2-3-12
제정일자	2015.02.03
개정일자	2015.02.03
책임부서/팀·계	사무처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’이라 한다)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대상) 이 규정은 본 대학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교직원에게 적용된다.

제 3 조(내용) 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, 세미나 및 교내에서 실시하는 교직원역량 개발교육 등으로 한다.

② 대학의 발전 및 교직원의 역량개발 증진을 위한 국외 우수대학 벤치마킹 등으로 할 수 있다.

제 4 조(시기)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 5 조(결과보고) 국내외 교육 및 연수, 세미나 등을 실시한 자는 7일 이내에 교직원 복무규정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. 다만, 교내에서 실시한 교육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 6 조(적용) 직원은 승진, 승급 및 전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, 교원은 교원 업적평가 및 인사 지침에 따라 반영될 수 있다.

제 7 조(보 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